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75회 임시회 (2025. 4. 25.)

2 0 2 5 년 도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
운 용 계 획 변 경 안

검 토 보 고 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5-39
- 나. 제 안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안일자: 2025년 4월 11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5년 4월 24일(목)

2. 제안사유

- 가. 행정안전부 주관 ‘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’에 선정되어 사업비 120백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음
- 나. 이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해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금 120백만원을 활용, 폐기물 없는 광고매체인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,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현재 시설비 40백만원에 지원금 120백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(기금의 용도)

5. 검토보고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2025년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,
- ‘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’¹⁾은 광고물 정비 등의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,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·신고 수수료와 불법 옥외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, 이행강제금, 옥외광고센터 수익금,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제2항²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정책사업인 ‘성숙한 옥외광고 문화조성’ 당초 지출액(3억 3,812만 8천 원)보다 **35.49%, 1억 2천만 원을 증액**하여 지출 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.
- 제출된 변경안은 2024년에 교부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금 1억 2천만

1) 설치연도 : 2009년

2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원을 활용하여,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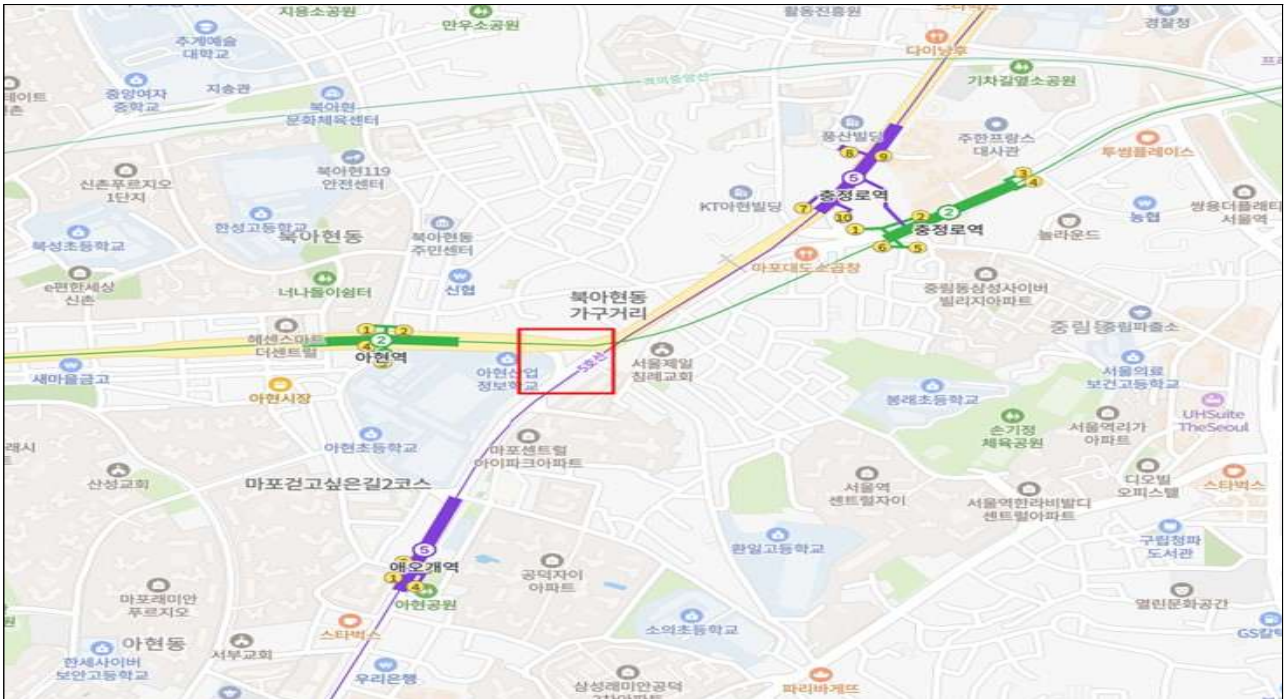
- **지출 계획**에 ‘예치금’을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, 이에 따라 ‘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사업’을 신설하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.
- 마포구는 현재 LED 전자게시대 총 3기(홍대입구역 사거리, 동교동삼거리, 공덕오거리)를 운영하고 있는 바, LED 전자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폐현수막을 줄일 수 있고,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 기회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동 사업은 전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「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」을 제출하여 마포구의회 본위원회 의결(제270회 임시회, 2024.9.3.)을 받았으나, 전자게시대 설치 예정지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, 동계 굴착공사 금지 기간(2024.12.1.~2025.2.28.) 도래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됨.
- 올해는 유동 인구 및 차량 동선,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게시대 설치 예정지를 ‘아현교차로’로 변경³⁾할 계획임.
- 일반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경우,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비 중 불용액(집행잔액)은 다음연도에 해당 사업예산에 사용할 수 없으나.

3) 전자게시대 설치대상지 위치도 및 사진 참고: 붙임1

-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발생한 미집행액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불용이나 미집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재원운용 환경으로 사료되나,
- 당해 연도에 지출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기금 재원을 효율적·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1

전자게시대 설치대상지 위치도 및 사진



아현교차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4.25.)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19.4.25)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 (개정 2019.4.25)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(개정 2019.4.25)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(개정 2019.4.25)
4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(개정 2019.4.25)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(개정 2019.4.25)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 2. 경관개선
 3.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(개정 2019.4.25)
 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 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 6.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신설 2019.4.25)
 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(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.4.25)
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